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목 차>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정혜영
	담당부서 (과)	농촌산업과		직급	사무관
	국장	김인중		연락처	044-201-1590
	과장	김보람		이메일	hyjung1205 @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김인중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2.규제조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4		
	3.위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5~7월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으로 숙박업소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고조 ☐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는 등 한계 ☐ (정부개입 필요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성범죄자의 민박 운영을 제한할 필요		
	7.규제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받은 경우 사업정지나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기준 마련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농어촌민박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어촌민박 이용객, 지역주민 등 ☐ (관련기관) 지자체		
	9.규제목표	농어촌민박에서의 성범죄발생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범죄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민박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면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판단됨 ☐ (비용) 농어촌민박 사업정지 및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 ☐ (편익) 국민의 안전 제고, 농어촌민박 활성화 등		
	12. 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가. ~ 사.(생략) <신설>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사.(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령</th><th colspan="3">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head><tbody><tr><td>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td><td>법 제89 조 제1항 제8호</td><td></td><td></td><td></td></tr><tr><td>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 관찰명을 받은 경우</td><td></td><td>사업 정지 3월</td><td>사업 장 폐쇄 명령</td><td></td></tr><tr><td>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2년 초과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td><td></td><td>사업 장 폐쇄 명령</td><td></td><td></td></tr><tr><td>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td><td></td><td>사업 정지 3월</td><td>사업 장 폐쇄 명령</td><td></td></tr><tr><td>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td><td></td><td>사업 정지 3월</td><td>사업 장 폐쇄 명령</td><td></td></tr><tr><td>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초과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td><td></td><td>사업 장 폐쇄 명령</td><td></td><td></td></tr><tr><td>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td><td>법</td><td>사업</td><td></td><td></td></tr></tbody></table>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89 조 제1항 제8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 관찰명을 받은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2년 초과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장 폐쇄 명령			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초과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장 폐쇄 명령			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법	사업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아.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89 조 제1항 제8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호 관찰명을 받은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2년 초과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장 폐쇄 명령																																										
3)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정지 3월	사업 장 폐쇄 명령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라 1년 초과 징역 또는 2천만원 초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업 장 폐쇄 명령																																										
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법	사업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89조 제1항 제9호	장 폐쇄 명령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18년 2월)하면서 숙박업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 특히, 여성 투숙객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어 숙박업소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필요성 대두
- * 제주도에서는 이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불안감 유지
- (정부개입 필요성)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처벌과 별개로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폐쇄 조치 등을 통해 민박에서의 범죄 예방 필요
 - 성범죄자의 민박 운영을 막지 않으면 민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어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 경중에 따라 1차 사업정지, 2차 사업장 폐쇄하거나 즉시 사업장 폐쇄 조치
- 강간 등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1년 초과 징역 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사업장 폐쇄 하도록 규정
- * 최초 성범죄 후 3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62.4%(「2020성범죄백서」, 법무부)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상의 범죄별 처벌기준 중에서 중간 정도에 속하는 징역 및 벌금기준으로 정지와 폐쇄 구분

규제대안 1	대안명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업 제한
	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처벌법, 성매매특별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경중에 따라 사업정지나 폐쇄 조치

<참 고>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9.01.31, '19.02.13)	농어촌민박 안전기준 강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 설명회('19.02.21)	
관계부처 의견조회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관계부처 의견조회 ('20.4.9 ~ 4.20)	의견없음
일반국민	농어촌정비법 입법예고('18.8.7~8.16)	이견없음

3. 규제목표

농어촌민박에서의 성범죄발생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여성 투숙객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정지나 사업장폐쇄 조치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재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 재발을 예방할 필요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하도록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기준)

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차	2차
1)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처분기준에 성범죄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어긴 경우를 추가한 것이고, 타법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준수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농어촌민박의 처분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인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18.8)
- 농어촌민박협회와 협의('19.1~2),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 부처 의견수렴('20.4.9~20)

2. 향후 평가계획

- '20.5월 중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입법예고) 실시
-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연2회) 시 현 규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민박 사업장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3. 종합결론

-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투숙객의 민박 이용 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정지나 사업장폐쇄 등 관련 조치 필요
-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개별 여행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이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처벌 외 사업장에 대한 제한 조치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
-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행정조치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 하므로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농어촌민박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건 등으로 사업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준수되기 어렵지 않을거라 예상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